SIBELCO

공급업체 행동 강령

본 강령 소개

목적

시벨코 공급업체 행동 강령(이하 "강령")은 당사의 ***Material Solutions Advancing Life***라는 목표에 따른 지속 가능한 행동 강령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,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는 당사의 약속을 나타냅니다.

시벨코는 자사의 모든 공급업체와 계약업체에서 본 강령에 명시된 4가지 타협 불가한 원칙(이하 "원칙")을 공유, 존중 및 준수할 것을 기대하며 공급망 하위 단계에도 이와 같은 원칙을 똑같이 적용하기를 바랍니다. 본 강령은 당사의 공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에 있어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시벨코와 협력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.

범위

강령의 4대 원칙은 시벨코와 거래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. 여기에는 각 공급업체의 모회사, 자회사 또는 계열사 법인도 포함됩니다. 공급업체에는 자사 직원, 대행업체 및 하위 계층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(필요한 경우) 이를 보급하고 교육하며 본 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.

강령의 4대 기본 특징

1. 건강, 안전과 품질

안전하고 건강한 직장:
각 업체를 운영하는 국가의 ***직장 내 건강 및 안전***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공정 안전성:
각 업체를 운영하는 국가의 ***생산 공정 관리 및 유지보수*** 관련 법률, 규정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제품 안전성:
각 업체를 운영하는 국가의 ***제품 안전성***(라벨링 및 제품 취급 요구 사항 포함)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 공급업체에서는 각종 안전 관련 정보(예: 제품 정보, SDS(Safety Data Sheet) 등)를 포함한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

품질 요구 사항:
각 업체를 운영하는 국가의 관련 법률, 규정, 품질 기준 또는 계약상 합의된 품질 요구 사항과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.

2. 인권 및 근로 기준

임금과 근로 시간:
각 업체를 운영하는 국가의 최저 임금 및 근로 시간 기준,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차별 금지:
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차별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원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.

강제 노동 금지:
각 업체를 운영하는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강제 죄수 노동, 강제 노역, 담보 노동, 노예 노동 또는 각종 형태의 인신매매, 체벌 또는 학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 합니다.

아동 노동 금지:
각 업체를 운영하는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최저 연령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3. 준법 및 윤리적 비즈니스 활동 영위

준법:
모든 ***관련 법률, 규정, 계약상 합의된 사항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***을 준수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부패 및 뇌물 수수 금지, 이해 상충, 공정 거래, 기밀 유지 및 지적 재산, 국제 무역 규정 준수, 라이선싱 및 권한 허가, 세금,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

윤리적 비즈니스 활동:
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고 본 강령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***윤리적 비즈니스 표준***을 지켜야 합니다. 여기에는 본 강령에 대한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도 포함됩니다.

4. 환경 보호

환경 보호 및 보전과 관련된 각종 관련 법률 및 규정과 표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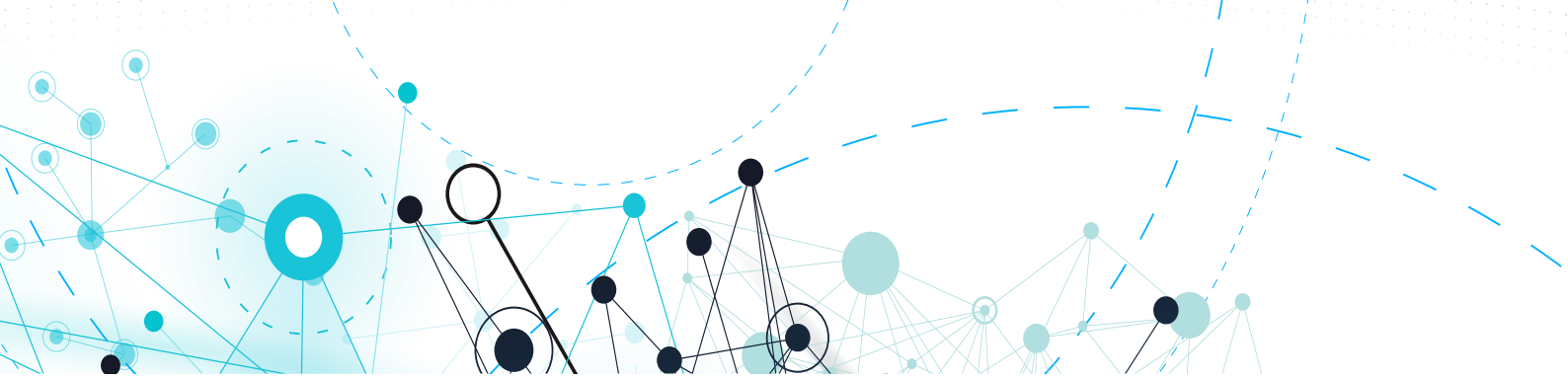

계약 및 주문에 적용

시벨코와 공급업체 간에 체결한 모든 약속/계약의 ***전제 조건***은 본 강령을 인지, 수락 및 준수하는 것입니다.

본 강령이나 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공급업체 측에 어떠한 수익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 본 강령의 원칙은 시벨코와 공급업체 간의 모든 약속/계약 산하 조항에 추가되는 것이며, 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.

모니터링 기준

시벨코는 다음과 같이 본 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.

- **자체 평가:** 시벨코는 공급업체에 자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**감사:** 공급업체는 시벨코에 감사(품질, 보안, 규정 준수 등) 권한을 허가해야 합니다. 이러한 감사는 시벨코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시벨코를 대신해 권한을 허가받은 제3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**제3자 평가:** 시벨코는 공급업체의 본 원칙에 관한 규정 준수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3자(예: 데이터 제공자)로부터 데스크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**인증서/진술문:** 시벨코는 공급업체 측에 본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인증서 또는 진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규정 준수

시벨코는 본 강령에 정립된 원칙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동적인 과정임을 잘 알고 있으며 공급업체 측에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도록 장려합니다. 공급업체에서 본 원칙을 위반하고 개선 계획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, 시벨코는 해당 공급업체와의 비즈니스를 지속할지에 대해 재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- 공급업체(나아가 각 공급업체의 공급망)에서는 본 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윤리 헬프라인(이메일: ethicalhelpline@sibelco.com)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

연락처

공급업체는 시벨코의 조달 또는 공급망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.